

獨逸大學의 교수양성과 임용제도

—外國의 大學教授任用제도 ④—

鄭 永 壽

(仁荷大·教育學)

外國의 大學教授任用제도

1. 대한의 大學教授任用制와 質 관리
2. 日本의 大學教員 任用制度
3. 競爭원리에 基한 美國의 교수임용제
4. 獨逸大學의 교수양성과 임용제도
5. 영국
6. 프랑스

1. 緒 論

獨逸에서 大學教授라고 하는 칭호는 사회적으로 상당한 권위를 부여받은 것으로서 그 전통은 中世時代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 教授라고 함은 學術大學¹⁾, 藝術大學, 教育大學, 專門大學으로 교수초빙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독일의 대학은 모두 국립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公務

員의 身分을 갖게 되며, 따라서 임명권자는 州政府의 文교부장관²⁾이 된다. 일단 교수로 임명된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대학으로 진출되거나 퇴직당하지 않도록 身分保障이 되어 있다.

독일 대학의 학문적 전통에 따라 教授로 임명되기 위한 조건은 무척 까다로운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大學基本法(Hochschulrahmengesetz) 및 각 州의 大學法에 규정되어 있다. 大學基本法에서는 교수임용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하고 있으며,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각 주는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대학교수들에게 있어서 昇進이라는 개념은 우리와는 무척 다르다. 즉, 助教授·副教授·正教授의 순서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終身制 公務員 신분의 교수와 契約期間制 公務員 신분의 교수로 크게 구별되며, 계약기간제 교수에서 종신직 교수로의 이동은 승진이 아닌 새로운 임용 절차를 거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대학기본법

1) 우리나라 일반 4년제 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을 學術大學(wissenschaftliche Universität)이라 일컫는다.
2) 獨逸은 각 州마다 교육담당 장관의 공식적 명칭이 상이하지만, 대부분이 문화업무를 동시에 취급하고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편의상 文敎部長官으로 통일한다.

및 대학법의 법적 규정을 토대로 하여 교수양성 과정, 교수의 자격 및 지위, 교수의 임용절차 등을 살펴 본 후에 우리나라 대학에 주는 시사점을 論議하고자 한다.

2. 教授 養成過程

독일 대학 교수들의 대부분은 교수로 임명되기 전에 學術助教(wissenschaftlicher Assistent)의 과정을 거친다. 대학의 학술조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우선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문적·직업적 업적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醫學系列의 경우에는 醫師免許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專門醫 과정을 마친 후에 학술조교로 임명될 수 있다. 일단 학술조교로 임명되면 3년 계약제 공무원의 신분을 획득하게 되고 이에 따르는 업무가 주어진다. 3년이 지난 후에는 教授資格請求論文(Habilitationsschrift)이 통과되었거나 또는 앞으로 3년 이내에 교수자격 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고 판정될 때 한번 더 3년 간의 재계약을 맺을 수 있다. 그러나 교수자격 청구논문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곧 교수 자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학술조교로 근무하는 기간중에는 教授를 도와 학문적 연구를 하는 이외에 학부 학생들에게 전공 영역에서의 상담을 하고 강의를 한다. 醫學系列의 학술조교는 환자치료의 임무도 함께 주어진다. 이러한 학술조교의 과정은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教授資格請求論文을 쓰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학술조교는 대학의 正教授 밑에 소속되어 학문적 수련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고유한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그리고 학술조교는 주당 4시간의 講義를 담당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강의는 주로 전공영역의 초급과정을 담당하게 된다. 대부분 이 과정을 통해서 교수가 되기 전의 강의경력을 쌓게 된다.

이와 같이 獨逸의 대학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博士學位를 마친 후 5~6년 간의 학술조교 과정을 거치면서 교수자격 청구논문을 준비하고 교수로서의 자질을 쌓게 되는데, 이 과정을 흔히 'Habilitation'이라고 한다. Habilitation이란 대

학에서 부여하는 최고의 자격으로서 대학에서 학술적인 강의를 할 수 있다는 資格(venia legendi)을 의미한다. 교수자격 청구논문은 일반적으로 권의 學術的 研究論文이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기존에 발표한 여러 편의 논문을 묶어서 해당 단과대학에 제출(kumulative Habilitation)할 수도 있다. 교수자격 청구논문의 심사는 단과대학에서 주관하게 되는데 일단 논문 발표이어서 討論(Colloquium)을 거친다. 여기에는 해당 학문영역의 교수뿐만이 아니라 인접 학문영역의 교수들도 참여한다. 이 과정을 거쳐 논문이 통과되면 끝으로 公開講義를 함으로써 독일 특유의 제도인 私講師(Privatdozent)의 자격을 부여받는다. 私講師는 대학에서 강의할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데, 따라서 별도의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다. 그리고 私講師는 일반적으로 그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이때부터 다른 대학의 교수로 초빙되기를 기다리면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學術助教로서의 계약기간이 6년을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Habilitation을 한 후에도 학술조교로 근무할 수 있다. 즉, 독일의 학술조교 제도란 우리나라 조교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大學教授가 되는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학문의 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럽의 직업교육 제도에 있어서 徒弟制度와도 흡사할 정도로 교수의 指導와 助言을 받는 학문적 수련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1967년부터는 박사학위 논문을 교수자격 청구논문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며, 여러 사람이 함께 연구한 것을 共同으로 제출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예는 극히 드물다.

3. 教授의 資格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일 대학에서의 教授는 모두 公務員의 신분을 갖게 되는데, 교수의 등급에 따라 終身制 公務員(Beamten auf Lebenszeit) 교수 또는 契約制 公務員(Beamten auf Zeit) 교수가 된다. 일반적으로 독일의 대학교수 봉급 등급 C4로 임명(경우에 따라 C3급도 正教授로 임명)되는 정교수는 종신제 교수이고, C2급으로 임명되는 客員外 教授(außerplan-

mäßiger Professor)는 계약제 교수이다. 일반적으로 Habilitation을 마치고 私講師로 5년³⁾ 이상의 교육경력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대학의 정교수로 초빙할 수는 없으나,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다고 판단될 때 文敎部 長官에게 추천하여 객원의 교수로 임명할 수 있다. 객원의 교수는 종신제 정교수와는 초빙조건 및 절차가 완전히 다르다. 객원의 교수도 법적으로는 敎授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추천받은 대학으로부터 계속 강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대학의 명예와 신뢰를 손상시키거나,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講義를 하지 않을 경우 교수 칭호를 박탈당하고 공식적으로 이를 자신의 이름 앞에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 사용하는 敎授 적합한 원칙적으로 C3 등급 이상의 종신제 교수(정교수 포함)를 의미한다.

獨逸의 大學基本法 제4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수임용의 일반적인 조건과 각 주의 大學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수임용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채용하고자 하는 영역의 학문을 大學에서 전공하고 그 분야에서 國家考試 또는 졸업시험을 치른 자 또는 그 분야의 博士學位 취득자

② 教育的 適性을 갖춘 자—이는 일반적으로 3년 이상의 講義 經歷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학술조교 기간중의 강의경력이다.

③ 學問的·藝術的 業務에 특별한 능력이 있는 자—일반적으로 博士學位 試驗에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

④ 그리고 추가적으로 교수직에 따라 다음과 같은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별도의 특별한 학문적·예술적 능력 : 일반적으로 敎授資格請求 論文審査(Habilitation)에 통과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이 경우 대학 밖에서의 활동도 관계없다. 예능계의 경우 최소한 3년 이상의 성공적 藝術活動이 증명되어야 한다.

—工學系列 및 專門大學의 경우 학문적 지식과 방법을 직업현장에서 최소한 5년 이상(이중 적어도 3년은 대학 밖에서) 적용하고 발전시킨 경험이 있는 자. 예외적인 경우에 이를 Habilitation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⑤ 그러나 現場에서 전공과 관련하여 아주 탁월한 능력과 教育的 適性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4가지 조건과 관계없이 교수로 임명될 수 있다.

⑥ 醫學系列(一般醫學·齒醫學·獸醫學)의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醫師資格證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⑦ 교사교육의 敎科敎授學과 관련된 분야의 교수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 조건 외에 해당과목을 초·중등학교에서 적어도 3년 이상 講義한 실적이 있어야만 한다.

4. 敎授의 地位

獨逸 大學의 敎授는 종신제 공무원과 계약기간제 공무원으로 구분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참고하고자 하는 교수직은 終身職 公務員敎授를 말한다. 그러나 독일 대학에서는 학문적으로 특별한 자질이 있다고 인정되는 學術 後繼者인 경우에 계약기간제 공무원 신분의 客員外 敎授(außerplanmäßiger Professor)로 임명될 수 있다. 이들은 정식 교수는 아니지만 敎授라고 하는 직함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주당 6시간의 수업을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각 주에 따라서 구체적인 규정 차이가 다소 있으나, C2급의 객원의 교수는 대학의 추천에 의해 文敎部 長官과 6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근무계약을 체결하는데, 계약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하다. 의학계열인 경우는 9년까지 허용하고 3년간 연장이 가능한 곳도 있다.⁴⁾ 객원의 교수로 임명되는 경우 과거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사람 또는 敎授로서 임명되기 이전에 적어도 2년 이상의 강의 경력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修習期間

3) 州에 따라서 경력의 基準이 조금씩 다르나, 대체로 5~6년 이상의 私講師 經歷을 요구한다.

4) 예컨대 Baden-Württemberg주에서는 一般學問 영역의 客員外 敎授는 4년 계약제이지만, Hamburg주에서는 6년 계약이 가능하다. 醫學系列의 경우는 대부분 科長醫師(Oberarzt)로 초빙되는 경우이다.

Probezeit)을 둘 수 있는데, 수습기간은 통상 1년으로 하고 있다. 문교부는 객원의 교수가 대학을 떠났더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의 신청에 의하여 容員外 教授(약자: apl. Prof.)의 직함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公務員 身分의 교수로 임명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종신직 공무원(Beamten auf Lebenszeit)의 신분을 지닌다. 공무원 신분의 교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罷免되거나 다른 대학으로 轉出될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이 폐교되었거나 다른 대학으로 흡수되었을 경우 또는 學科가 폐쇄되었을 경우, 현재 재직하고 있는 대학과 동등한 다른 대학으로의 진출이 본인의 意思와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공무원 봉급 등급 C4로 임명된 경우에는 正教授(Ordinarius)의 직함을 사용할 수 있으며, C3인 경우에도 연구와 교수의 임적이 뛰어나면 대학 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교부 장관이 正教授의 직함을 줄 수 있다.

교수는 4년마다 1학기씩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1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한편, Berlin 주에서는 교수가 대학을 벗어나 1주일 이상 자리를 비울 때는 學期中이거나 放學中이거나를 막론하고 이를 총장에게 사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대학은 긴급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불허할 수도 있다. 교수들은 大學 또는 州政府에서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받은 事案에 대한 所見書(Gutachten)를 제출하고 이에 수반되는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때 특별한 별도의 報酬를 받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大學教授의 業務領域은 다음과 같다.

- 대학의 卒業試驗 및 國家考試 참여
- 일반 학문적·예술적 분야에 있어서의 학생 지도 (正教授의 경우 適當 授業時間 義務는 8시간)
- 大學의 改革이나 교육과정 개정작업 참여
- 대학 一般行政의 참여
- 학생상담

- 환자치료 (의과대학의 경우)
- 공공 지원금에 의해 설립된 범지역적 學術振興團體에서 일하거나 그러한 단체를 위해 수행하는 활동
- 강의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학의 繼續教育 프로그램 참여

5. 教授의 任用過程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독일 대학의 교수는 大學의 추천에 의해 文教部長官이 임명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임용절차를 좀더 구체적으로 몇몇 州의 예를 들어가면서 살펴 보기로 한다.

대학에서 교수의 자리가 하나 생기게 되면 먼저 大學評議會(Senat)에서 그 자리의 기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예컨대 다른 영역의 교수를 초빙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충원할 필요가 없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단과대학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한다. Nordrhein-Westfalen주의 大學法에 의하면, 대학評議會는 중요 사항을 결정하는 최고심의기구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人士들로 구성된다. 인원 수는 대학의 사정에 따라 2배로 할 수 있는데, 교수는 12명으로 제한한다.

- 議長으로서의 總長
- 7명의 教授 代表
- 2명의 학술 교직원 대표(예컨대 學術助教)
- 2명의 學生 代表
- 1명의 비학술 대표 (一般 事務職員)

일단 교수를 초빙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대학은 법적으로 정해진 적절한 기간 내에 교수초빙 公告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停年退任하는 교수의 자리를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 교수의 정년 퇴임 6~12개월 전에 교수초빙 公고를 내야 한다.⁵⁾ 그밖의 경우, 즉 教授增員으로 인하여 자리가 하나 새로 생겼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교수직이 空席이 되어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세

5) 教授招聘을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즉, 學科가 新設되는 경우, 교수를 증원하기 위해 充員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교수가 停年退任하는 경우 등이다.

6) 각 주마다 기간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Hessen주에서는 停年 6개월 전에,

로운 자리가 생긴 시점에서 보통 3~6개월 이내에 教授招聘 公告를 해야 한다.” 교수초빙 공고에는 반드시 교수가 담당해야 할 業務上 課題의 형태와 범위를 명시하여야 한다. 교수초빙 공고를 한 후에 단과대학(Fakultät)에서는 교수초빙위원회(Berufungskommission)를 구성하여 교수초빙 후보를 결정하게 된다. 教授招聘委員會는 각 주마다 조금씩 다르게 구성되기 때문에 몇몇 주의 예를 들어보기로 한다. 먼저 Baden-Württemberg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委員會가 구성된다.

- 委員長으로서 學長 또는 학장의 위임을 받은 교수
- 단과대학에서 3명 이상의 교수
- 다른 단과대학에서 2명 이상의 교수
- 학술적 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술조교)
- 학생대표 1명

교수초빙위원회의 교수는 正教授級이 결반을 넘어야 한다.⁸⁾ 또한 교수초빙위원회에 大學의 評議會 측에서 자문관의 성격을 지닌 사람을 1명 보낼 수 있으나, 투표결정권은 없다. 한편, Bremen주에서는 교수대표 5명, 학술조교 대표 1명, 학생대표 3명으로 구성되고 평의회에서 1명을 보내 자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iedersachsen주에서는 교수대표 3명, 학생대표 1명, 학술조교 대표 1명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수초빙에는 대학본부(평의회), 교수, 조교, 학생 등 대학행정에 관련된 다양한 利害集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학생대표와 조교대표의 수는 주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교수초빙의 過程에 반드시 참여

하고 있다.⁹⁾ 이 과정에서 Bayern주의 같이 學生 代表의 의견을 교수초빙 후보자 명단에 첨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도 있다. 이와 같이 구성된 교수초빙위원회에서는 3명의 후보자를 투표로 결정하여 단과대학의 확대운영위원회를 거친 후 대학의 評議會 議長(통상적으로 總長)에게 통보한다. 원칙적으로 교수초빙은 그 대학 내에 있는 사람들(예컨대 학술조교, 사상사, 계약기간제 직원의 교수 등)은 후보 대상에 들어올 수 없다. 다만 학술조교를 하다가 계약기간제 직원의 교수(apl. Prof.)로 임명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추천인 명단은 반드시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대학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所見書(Gutachten)¹⁰⁾ 및 연구업적 리스트 등 제반 서류를 첨부하여 문교부로 보낸다. 교수초빙 후보자 명단에는 원칙적으로 公開採用에 응모한 사람들의 이름만을 기재해야 하는데, 예외적으로 Berlin주와 같은 곳에서는 대학총장이 공채에 응모하지 않은 사람 1명을 별도로 추천할 수도 있다.

문교부는 해당 대학 總長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할 教授 1명을 임명하여야 한다.¹¹⁾

- ① 교수 자리가 공석이 된 후 6개월 이내에 대학으로부터 教授招聘 추천이 없는 경우
- ② 문교부가 대학에서 보낸 후보추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새로운 후보명단을 요청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大學으로부터 추천이 없는 경우
- ③ 교수초빙을 신청한 시점에서 현재 그 職을 갖고 있는 1교수의 停年이 아직 안 된 경우

Bremen주에서는 12개월 전에 公告하도록 되어 있다. Bayern주에서는 정년퇴직으로 인해서 教授 자리가 비는 경우 7개월 이내에 문교부 장관에게 교수추천 후보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 7) Bremen주에서는 空席이 된 후 3개월 이내에, Hessen주에서는 6개월 이내에 公告하도록 되어 있다. Berlin주에서는 8개월 이내에 文敎部에 후보를 추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8) Bayern주에서는 2/3 이상이 正教授라야 한다.
- 9) 한편, 停年退任하는 교수의 후임을 추천하는 경우에 그 당사자는 관례적으로 교수초빙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는다. Berlin주의 경우 學術職員이 아닌 일반 事務職員을 교수초빙위원회에 참여시키기도 하는데, 투표권은 없고 다만 諮問人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 10) 教授候補에 대한 所見書는 일반적으로 그 대학에서 작성한 소견서 외에 다른 대학의 해당분야 교수가 쓴 소견서도 함께 첨부하여 추천의 公正性과 客觀性을 기하고 있다. 특히, 후보들의 教育的 適性을 알아보기 위하여 과거에 강의하였던 대학으로부터 講義에 대한 소견서를 첨부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Bayern주).
- 11) 이는 Baden-Württemberg주의 예이지만 대부분 비슷한 실정이다. Berlin주에서는 大學으로부터 교수추천이 있은 후 3개월 이내에 文敎部가 교수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文敎部는 대학에서 추천한 후보들의 우선순위를 무시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대학에서 추천하지 않은 사람을 文敎部가 임의로 교수로 임명할 수도 있다.¹²⁾ Bayern주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문교부가 대학에서 추천하지 않은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① 두번째의 추천명단에도 適格者가 없을 때
- ② 대학에 교수직의 空席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에서는 교수승원이 필요없다고 결정할 경우, 이 경우에는 문교부가 직접 교수초빙 공고를 내야 하며 해당 대학에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대한 대학 측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 ③ 문교부의 두번째 후보추천 요청에 大學이 거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등이다.

6. 韓國 大學에의 示唆點

이상에서 獨逸 大學의 教授任用 過程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우리나라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특히 韓國의 大學敎育 發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Habilitation 제도이다. 이는 教授의 學問的 資質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탁월한 학문적 업적이 있는 경우 Habilitation을 하지 않고도 教授로 임용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있어서 이는 극히 드물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博士學位를 마친 사람들이 正教授의 지도 아래 5~6년 간의 학문적 수련과정과 講義經驗을 쌓음으로써 教授의 質을 높이는 것은 우리나라와 같이 박사학위만 하던 곧바로 교수로 임용될 수 있는 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博士學位 소지자가 국내·외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박사학위 하나가 결코 教授의 資格要件이 될 수 없는 시점이 곧 다가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

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教授任用 過程에서 교수 후보들의 敎育的 適性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독일 대학에서 평가하는 敎育적 적성이란 다름아닌 2~3년 간의 講義經驗을 말한다. 박사학위를 마치고 學術助敎로 근무하면서 1주일에 4시간씩 담당했던 강의경험은 나중에 전임교수로 활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강의경력이 전혀 없어도 專任敎授로 임용될 수 있는 우리 제도는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심지어 초·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이전에도 짧은 기간이나마 敎育實習을 하는데, 대학교수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셋째, 각 學問分野의 특성에 따라 教授資格의 前提條件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독일의 工學系列 대학과 專門大學에서는 수년간의 현장 경험을 요구하고, 敎師敎育 機關에서 敎授法에 관련된 과목을 담당할 교수는 해당 교과목을 초·중등학교에서 강의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醫學系列의 교수는 해당 분야의 醫師資格證 취득을 필수로 하고, 藝能系 大學의 경우는 실제로 예술활동을 수년간 해야만 하는 등 일반적인 교수 자격요건 외에 추가로 요구하는 조건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공학계열의 경우는 일종의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理論과 實踐이 괴리되어서는 학문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교사교육 기관(예컨대 師大 또는 敎大)에서 敎授法을 담당하는 교수에 대해서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가? 박사학위를 마친 후 産業體에서 근무한 경력이 대학교수로 임용되는 데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허다하게 있으며, 敎科敎育學을 담당해야 할 교수의 초·중등학교 경력이 법적으로 完全 認定되지 못하고 있다.

넷째, 教授職이 空席이 되었을 때 해당 대학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문교부에 승원 요청이 없을 경우 文敎部가 직권으로 교수를 초빙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우리의 現實과 비교

12) 주에 따라서는 大學의 교수초빙위원회에서 2/3 이상의 多數決로 결의한 후보 우선 순위는 文敎部가 특별한 理由가 없는 한 지키도록 할 수도 있다.

하면 약간 거리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우선 제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國立이나 私立이나를 막론하고 최소한의 교수를 확보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수충원 요청을 하지 않으면 政府나 財團에서는 그만큼 좋아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대학에서는 학교당국에서 교수증원을 하라고 해도 學科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증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그 피해는 학생들이 받게 되므로 교수충원 또는 증원의 결정을 학과에만 맡기는 것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다섯째, 교수초빙에 있어서 해당 대학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學術助教, 私講師 등을 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는 學問의 多樣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취해지고 있는 조치로서 학문의 폐쇄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리고 본교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評價 所見 點을 쓰는 데 있어서 편파적일 수 있는 소지를 없앤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學術助教나 私講師는 모교출신이다. 독일 대학에서 母校出身의 교수임용을 전혀 배제하는 것은 아니나, 일단 다른 대학에 교수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모교로 초빙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교수 채용 과정에서 모교출신 교수의 比率이 간혹 문제가 되는데, 독일의 임용제도를 他山之石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